

영등포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5.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12호로 2012년 4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17.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함으로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 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제한대상 :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의무휴업일수는 월2회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과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시로부터 대형 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지정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권고와 2012년 3월 22일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서울시 자치구 모두가 동일한 날짜인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월 2회)을 지정하기로 결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법취지가 구현되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우리구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 참고사항으로 영등포동 소재 타임스퀘어 내 이마트 영등포점은 쇼핑센터 유통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등의 대상이 아니므로 저축대상이 아니며 강동구 관내 대형마트와 SSM 5곳은 영업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세계무역기구, 한·미자유무역협정, 한·EU자유무역협정 등에 소송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송파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 5곳이 소송 중에 있으며 4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난 4월 20일 울산 중구의회, 4월 25일 광진구의회에서는 다른 자치구의 강제휴업을 지켜본 결과 재래시장에 손님이 늘지도 않으면서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되었고 휴무시 입점한 점포와 인근 상권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조례안을 부결한바 있음.

참 고 자 료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17>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3, 2010.11.24, 2012.1.17>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6.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2.1.17>

2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①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의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시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2. 일요일 또는 공휴일 중 월 2회로 지정되는 의무휴업일

②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3.15]